「지방정부연구」 제4권 제2호(2000 겨울) : *217~243*

경찰대개혁에 따른 기강확립의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 부산지역 경찰을 중심으로 -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Great Police Reform and Policy Implications

- Focused on Establishment of Official Discipline of Pusan Police -

김 인(부산대학교 행정학과)
허 용 훈(부경대학교 행정학과)
이 희 태(신라대학교 법정학부)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official discipline of Pusan police, of Great Police Reform enforced for 100 days in Korea, an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The data for the evaluation were gathered from the questionnaire intended for policemen in spite of the weakness of the research method. This research found that policemen considered the reform had made greatly positive influence on the improvement of official discipline in terms of kindness, sincerity, confidence, typicality, and uprightness. But, newspapers reports continuously the bribe cases of police after the reform.

Therefore, for the success of the police reform, we have to drive continuously the reform, including change of the policemen's consciousness, improve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of policemen, change of recruitment method, improvement of their morale and treatment, citizen participation in police administration, reform of police inspection, and adaptation of the whistle blow, breaking from the short-term, formal, visual one.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경찰은 국민생활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권력작용기관으로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없이는 참된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을 수 없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법집행 없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경찰의 개혁을 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도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경찰제도의 실시 등 경찰개혁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분석·검토해 오고 있다. 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경찰은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이미 1998년 12월에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개혁과는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1999년에는 부패한 경찰의 모습이 잇따라 언론보도를 통하여 노출되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하여 경찰의 존립마저도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조직 폭력배 비호, 개인정보 누출, 고위 경찰간부의 수뢰 등에서 밝혀진 경찰의 부패 사실은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실상은 정부개혁을 이끌어 가야 할 경찰을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경찰청, 1999).

작년 말에 취임한 신임 이무영 경찰청장은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여 1999년 12월부터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이란 이름 하에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경찰의 대개혁은 추락한 경찰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경찰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경찰은 경찰기강확립, 인사관리개선, 근무여건 선진화, 민생치안 강화 및 사회안전확보,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개선 등을 주요 개혁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선정하였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근본 사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경찰에 대하여 친근감과 신뢰를 지니며 범죄와 사고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는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이상안, 1999: 786). 이를 위해서는 경찰기강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강확립을 통해 낡고 불합리한 관행과 의식 및 타성에서 벗어나 새롭게 탈바꿈하는 전환의 기회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되었던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을 통한 경찰기강확립의 성과를 평가하고 아울러 향후 경찰의 기강확립을 위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 분야나 주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는 경찰의 요청에 의해 상기 작전이 수행 중인 2월에 착수되었으며, 이 때 주제와 연구범위가 설정되었다. 따라서 비록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이 다양한 분야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경찰기강확립의 분야에만 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찰기강확립과 관련한 성과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지리적으로 그 범위를 부산광역시에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할 측면이 있다.

먼저, 성과 평가에서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과 후를 비교하거나 혹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지역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을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본 연구는 경찰대개혁작전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후 착수되었기 때문에 상기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제약이 있다. 즉, 프로그램 실시 전의 경찰기강확립과 관련되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동시에 전국적으로 상기 프로그램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 집단의 선정이 불가능하다.[1)]

1) 경찰 대개혁의 성과를 개혁대상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경찰관들이 개혁대상이라는 점을 인식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둘째, 경찰기강확립은 내부 규율준수를 통한 복무자세의 확립과 그리고 경찰의 부정부패 해소라는 두 가지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후자의 경우가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중요한데, 이와 관련되는 측면은 은밀히 이루어지고, 동시에 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를 은폐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연구에서 그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비록 각종 통계 자료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즉, 비리와 부패의 발생 빈도가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비리와 부정부패가 심화되어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검찰과 경찰의 사정 강화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부정 부패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짧은 기간 동안에 직접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일반적인 부패인식 정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것이 고작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표본조사를 통해 부정 부패의 경험자들을 찾아야 하며, 이런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의 정직한 응답결과를 얻기란 어려우며, 동시에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찰기강확립과 관련한 성과의 평가는 차선책인 경찰대개혁작전시행에 따른 경찰 자신들의 인식에 기초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이런 평가의 결과는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기 쉽다. 따라서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 변수별로 다양한 하위 변수를 선정하여 다원척도를 구성하였고 동시에 Cronbach's α를 통해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지의 익명성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와 관련되는 항목을 줄이고 응답자 소속 경찰서나 파출소의 이름도 적지 않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부산지방경찰청, 각 경찰서 및 파출소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지방경찰청의 경우 24부, 14개의 경찰서 당 각 2부 28부, 211개의 파출소 각 1부씩 211부 총 263부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257부로서 회수율이 97.7%로 나타났다. 이렇게 회수율이 높은 것은 본 조사에 대한 경찰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Ⅱ. 경찰기강확립의 이론적 배경

1. 경찰기강의 개념과 차원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있다(경찰대학, 1999: 1181). 이러한 경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한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기강이 확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경찰기강은 다의적인 개념으로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무척 어렵다. 일반적으로 경찰기강이란 경찰의 기율과 법강(法綱)으로서 경찰행위의 표준이 될 만한 질서 및 기본적 규범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경찰기강의 확립은 경찰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다하고 그 기능을 완수하기 위

하여 이에 따라 반응하게 되는 소위 호손효과(Hawthorne effect)가 나타나서 개혁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Kerlinger, 1973: 345). 이런 경우 흔히 위약투여방법(placebo method)을 사용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전국의 모든 경찰이 경찰대개혁의 대상집단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경찰관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성과 평가의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해석상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 즉, 엄밀하게 해석하면 경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경찰기강확립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상의 성과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하여 직무수행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되는 경찰의 기본자세를 준수하는 것이다.

경찰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자세로서는 경찰사명, 경찰정신, 규율, 단결, 책임, 성실·청렴성의 6가지 항목과 관련하여 제시하기도 하며, 이는 크게 경찰의 규율 준수와, 경찰의 청렴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대별하기도 한다. 전자는 대민친절, 직무수행시의 행동수칙의 준수를 포함하는 경찰관의 복무자세를 의미하고, 후자는 경찰부패근절을 의미한다(경찰대학, 1999: 1181-1191)[2].

경찰관의 복무자세에 대해 경찰실무전서에서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예절이다.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상·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둘째, 용모·복장이다. 경찰공무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환경정돈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사무실과 그 주변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넷째, 일상행동으로서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①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②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명랑·활달하여야 한다. ③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경찰대학, 1999: 1181-1191). 이러한 모범성과 관련하여서는 시민으로서의 기초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기강확립을 위한 경찰관의 복무자세로는 위의 네 가지 외에도 출근 및 중식시간을 준수하고,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물자를 절약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관이 직무수행시에 준수해야 하는 행동수칙을 경찰실무전서에서는 자세하게 규정해 두고 있다[3](경찰대학, 1999: 1181-1191).

이와 같이 다양하고 동시에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구체성에도 다소 차이가 나서 경찰관의 기본자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으나 친절성, 성실성, 상호신뢰성, 모범성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들 각 항목들의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표 2〉의 변수목록에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경찰기강의 두 번째 차원은 청렴성으로서 이는 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경찰부패의 척결이다. 부패에 관한 개념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도 매우 다양하

---

2) 경찰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자세로서는 첫째, 경찰사명으로서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둘째, 경찰정신으로서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봉사·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 셋째, 규율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 넷째, 단결로서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업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경주해야 한다. 다섯째, 책임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서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여섯째, 성실·청렴으로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3) 첫째로, 지정장소 외에서는 직무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로,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세째로, 민사분쟁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넷째, 상관에 대한 신고로서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출장·연가·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고 및 통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은 치안상 필요한 상황의 보고 및 통보를 신속·정확·간결하게 하여야 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게 나타나고 있다(전수일, 1996). 일반적으로 경찰부패는 경찰관이 사적인 이익(금전적 이익, 지위확보, 영향력의 행사 등)이나 기타 어떤 목적을 위하여 경찰관의 공적인 직무상의 역할이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지위와 관련된 법적·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행위와 관련된다. 여기에는 경찰관 개인의 이득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을 위한 권한 남용의 행위나 범죄행위는 물론이려니와 직무와 관련된 경찰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도 포함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1). 그러므로 경찰의 비리 및 부패문제는 법규나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비공익적이고 반사회적인 사익추구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런 청렴성의 문제는 내부 인사청탁, 내부에서의 사건청탁, 인사의 비합리성 등 경찰 내부상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제도 있으며, 조직폭력배와의 유착, 지방토호세력과의 유착, 외부인사와의 회식,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경찰권의 남용과 정보의 활용 등 경찰외부와 관련된 부정부패의 문제들도 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이와 같은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경찰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경찰 부서별로 정리해 두고 있다(경찰개혁위원회·치안연구소, 1999)[4].

2. 경찰기강 확립의 중요성

경찰의 기강확립은 경찰업무의 특성상 공적 신뢰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경찰기강의 중요성은 경찰업무의 특수성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즉, 첫째, 경찰 업무의 대부분은 대민중심적 업무로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밀착형이다.

둘째로, 경찰활동은 집행현장의 복잡성이나 동태성으로 인하여 경찰관의 재량권의 행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셋째로, 경찰업무의 집행활동은 높은 가시성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법집행이나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수행의 최종 전달점은 사람에 한정되고 그 집행수단은 강제적·직접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활동의 가시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송병주·정원식, 1999: 93).

넷째, 정책대상집단의 불명확성을 들 수 있다. 특히 법집행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업무의 대상집단은 불특정다수로서 지역적으로도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규제대상 행동은 매우 다양하고, 그 발생이 갑작스러우면서도 급한 해결을 요구하고 그 해결과정은 위험이 수반될 수 있다(이유준, 1995: 57). 그러므로 돌발적인 사건해결의 시급성과 문제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경찰조직은 기강확립을 통하여 기동성과 협동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조직적 체계성의 확보가 요구된다.

---

4) 경찰의 비리 및 부패는 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전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체로 방범, 교통, 수사, 인사, 경리, 파출소의 6개 분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방범 분야는 변태영업 묵인, 단속정보 누설, 신고·개업 인사, 미성년 고용 묵인, 행정처분중 영업 묵인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로, 교통 분야는 면허발급과 행정처분, 음주단속 묵인, 중대사고 경감, 합의유도 사고 묵살, 뺑소니 처리, 특례법 적용과정, 병원·정비업소 알선, 사고 축소, 공사현장 단속 빙자, 특정업소 주정차 묵인, 대상업소 월정금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수사 분야는 편파축소 수사, 수사비명목 월정금, 유치장 편의, 벌과금 징수 과정, 고소사건 우선처리, 구속대상 기소중지처리, 변호인 알선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인사 분야는 정실인사 청탁, 예산운용 지출 관련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경리 분야는 물품조달 특혜, 입찰·구매 정보 누설 등을 들 수 있다. 여섯째, 파출소에서는 관내 업소 불법묵인, 대소사건 합의 종용, 공사장 도로점용 단속 빙자, 도급경비 변태 지출 등의 비리유형을 들 수 있다(경찰개혁위원회·치안연구소, 1999:433).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끝으로, 경찰활동은 단속이나 인·허가 등 규제정책의 활동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불만이나 민원제기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경찰이 수행하는 활동은 다른 유형의 행정활동에 비해 그 집행과정에서 집행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의 강도가 높고, 집행과정상의 결정내용에 대해 반발의 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날 수 있다(Ripley and Franklin, 1980: 76-85).

경찰업무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경찰이 법을 어기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법과 권위를 스스로 깨뜨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며 수년동안 쌓아온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3). 이러한 측면에서 경찰의 기강확립은 경찰이 공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원천으로서 경찰서비스의 만족도와 공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3. 경찰기강 해이의 원인과 대책

경찰기강의 해이는 경찰기강의 유형별로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과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기강의 해이 원인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경찰의 기강해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의 기강해이 사범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여기서는 경찰기강의 해이 원인을 유형화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를 크게 5가지 관점에서, 즉 개인적 심리적 접근방법, 역할론, 제도적 접근방법, 체계적 접근방법, 문화·환경적 접근방법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적 심리적 접근방법에 따르면 경찰기강의 문제는 경찰관 개인의 문제로서 경찰기강 해이 문제는 경찰관 개인의 성격이나 품성 및 인성 등에서 기인한다고 본다(이재은, 1998: 191; Roberts, 1988: 2).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찰관의 대민불친절, 복무자세의 해이, 행동수칙의 불이행 등과 같은 경찰의 기강문제는 경찰공무원 개인적으로 볼 때 경찰관으로서의 직업의식의 결여, 사명감의 부족, 공정한 법집행자로서의 전문성 결여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찰부패는 경찰관 개인의 탐욕성과 이기심의 발로로 본다. 사실 개인적 심리적 접근방법은 정치행정현상을 연구하는 접근방법으로서 오랫동안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특히 같은 제도나 상황하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내는 개인의 행태를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Isaak, 1981: 199-230).

이와 비슷하게 역할론은 공직에서의 부정부패를 역할갈등을 통해 파악하고 설명해 볼 수 있다고 한다. 경찰관의 지위와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기대되는 행동 유형이 있다.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자세를 지켜야 하며 또한 청렴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것은 경찰관의 공식적인 역할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경찰관은 개인적으로 한 가정이나 혹은 사회의 여러 하위 집단의 구성요원이다. 이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그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때로는 경찰관으로서의 공식적인 역할과 상충되기도 한다. 즉, 교통법규를 위반한 시민이 뇌물을 주고 경찰관이 눈감아주기를 기대하기도 하며, 업주들이 뇌물을 주고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또한 가족들이 보다 풍요한 경제적 생활을 누리기를 기대하며, 이것은 가장인 경찰관에게 돈을 잘 버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요청하게 된다. 이런 역할들이 서로 상충되어 역할갈등이 생기는데, 그가 어떤 행태를 나타낼 것인가는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강신택, 1995, 349).

그러나 경찰기강해이 문제를 개인적 심리적 차원이나 역할갈등 등을 통한 접근만으로는 그 해결에 한계가 있다. 경찰기강문제는 경찰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조직을 포함한 전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사회기강의 발로이기 때문에 법·제도적 측면이나 경찰조직 내·외적인 환경을 간과할 경우 경찰비리 및 부패는 결코 개선될 수 없다. 그러므로 경찰기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측면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적 접근방법은 경찰기강의 해이원인을 제도 혹은 법률의 결함으로 돌리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경찰행정 관련 제도들은 그 기반 자체가 경찰기강 문제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먼저 우리의 현실은 법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국민들이 일단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와 더불어 규제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입장에서 자의성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또한 법이나 규제의 집행과정이나 운영상에 있어서도 그 규제절차가 명확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양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법을 준수해야 하는 시민 양편 모두에게 있어서 이것은 경찰기강을 저해하는 요인이요 기회가 될 수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3).

경찰기강의 차원 가운데서도 특히 경찰부패를 설명해 주는 적절한 접근방법으로서 체계적 접근방법을 들 수 있다. 경찰부패는 경찰관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내의 여러 부문들이 체계적 연결망 속에서 서로 원인을 제공받으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1).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경찰부패의 단절을 위해서는 경찰관을 중심으로 한 사회내의 각 활동주체들간의 비도덕적 연결고리를 단절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윤태범, 1999: 518; 이재은, 1998: 203). 이런 접근방법들은 경찰부패에 대한 보다 거시적인 연구방법들이다.

또한 경찰기강문제는 경찰 내적·외적인 문화·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물론 체계적인 접근방법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부패의 문제를 특히 그 사회의 문화·환경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주요한 접근방법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은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기강해이사범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 경찰관들 중의 일부는 「동료들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혼자 깨끗한 척 하기 싫어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부정이나 비리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다(표창원, 1999: 5). 이것도 물론 역할갈등의 관점에서 설명해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조직의 문화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처럼 경찰동일체의 원칙을 강조하는 1차 집단 중심의 폐쇄적 조직환경은 경찰기강의 해이를 유발하는 중대한 요인이다. 또한 외적 환경으로 경찰 인사에 있어서 외부의 실력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거나, 경찰과 접촉하는 민원인이 뇌물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찰기강 문제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3). 이것은 경찰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경찰내·외적인 환경으로서의 경찰문화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접근 방법에 따라 경찰기강확립을 위한 대책들이 각각 다르게 수립될 것이다. 이와는 달리 경찰기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전적 예방조치와 사후적 통제장치로 나누어 제시하기도 한다. 즉, 전자는 경찰기강확립을 위한 사전예방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경찰기강해이사범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전예방적 조치들은 주로 경찰기강의 문제를 사전에 포착하여 이를 예방하는 방법인 반면에, 사후적인 통제장치는 기강이 해이한 경찰관들을 찾아내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다(표창원, 1999: 9).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경찰기강 확립을 위한 사전예방적 방법들로서 Lynch는 경찰관에 대한 교육과 훈련, 조직내부에서 형성되는 부정부패와 부정부패 관련자, 내부 고발자 등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 등을 중요한 요소로 들고 있다(Lynch, 1989.: 169). 또한 Sherman은 교육훈련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 적극적이고 사명감이 강한 지휘관의 책임 있는 개혁, 효과적으로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초급간부의 장악력 강화, 확실한 신상필벌의 인사제도 확립을 들고 있다(Dombrink, 1988: 226).

또한 맥나마라는 경찰기강의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서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의 형성, 공정하고 효과적인 감찰, 경찰의 전문화와 기타 부패예방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지, 부정부패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업무 종사자의 정기적 순환배치 제도의 정착 등을 들고 있다(McNamara, 1975; 표창원, 1999: 9).

부정부패의 예방 조치로서 부정부패를 보다 쉽게 노출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정부패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사리 드러나지 않고 많은 경우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따라서 부정부패가 드러나게 되면 현행 법률에 따르면 뇌물을 주고받은 양당사자가 모두 처벌을 받게 되므로 모두 은폐하게 된다. 이런 점은 죄수의 딜레마이론(Prisoner's Dilemma Theory)을 통해 부정부패 행위를 보다 쉽게 노출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Dunn, 1981: 104-105). 즉,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 중 먼저 신고하는 사람에게 죄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개인은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서로 먼저 신고하거나 아니면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제도의 도입은 제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 것이므로 이들의 반대에 의해 쉽게 채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건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강한 바램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사후적인 통제장치는 경찰기강의 강화를 위해 주로 경찰기강해이사범에 대한 적발, 조사 및 징계에 크게 의존하는 전략이다. 사전적 조치가 긍정적 전략의 일종이라면, 사후적 전략은 주로 강력한 통제와 관련된 부정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사후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곧 엄격한 사정체계와, 사정을 함에 있어서 옥석을 구분하여 엄정한 처벌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적발과 정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윤태범, 1999: 15). 그러나 사후적인 통제장치들은 사전예방 조치들과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게 사후통제에 의존할 경우 사기저하,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악화, 동료간 불신풍조 확산 등 많은 중대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Bracy, 1988: 176).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경찰기강확립방안은 각 경찰지휘자들이 그 조직의 상태와 특성에 맞는 기강확립제도와 정책을 찾아내어 실행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사전예방 조치들과 사후적인 기강해이사범 통제장치들과의 조화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내는 것이다(표창원, 1999: 15).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Ⅲ. 경찰기강확립의 성과 평가

1. 경찰대개혁 100일작전 전개와 기강확립의 과제

경찰의 각종 비리 연루 사건들이 연일 신문에 보도되어 경찰의 기강이 극히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신임 경찰청장에 취임한 이무영 경찰청장은 취임하자마자 경찰의 대대적인 개혁을 천명하고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고(1999. 11. 16), 이어서 전국 경찰지휘관 합숙 Workshop이 개최되었고, 이와 아울러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 선포식을 가졌으며(1999. 12. 1),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찰청장 지휘서신이 하달되었다(1999. 12. 8). 특히, 지휘관 Workshop에서는 「경찰의 대개혁 100일작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에 대한 청장의 특별 강연이 있었으며, 그 중 부조리근절 및 기강확립은 첫 번째 항목이었다. 그리고 강연 내용은 책으로 인쇄되어 전국의 각급 경찰서 및 파출소에 배포되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경찰 대개혁 100일 작전」의 주요 구성 부분이 되었다.

경찰대개혁을 통한 경찰기강확립을 위하여 선정된 과제는 총12개 과제로서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에서 1개 과제가 선정되었고, 감사관실에서 10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총무과에서 선정한 경찰기강확립과제는 「기본근무자세 및 예절준수 확립방안」의 1개 과제이고, 감사관실에서 선정한 경찰기강확립과제는 1) 공개적이고 투명한 감찰활동실시, 2) 「계고」, 「특별교양」, 및 「주의」 처분개선, 3) 과중한 징계양정 완화, 4) 감독자 연대문책 합리화, 5)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 추진실태 점검, 6)개혁과제항목 위주 감사, 7) 재산등록서류 열람·복사업무 개선, 8) 부조리근절 및 기강확립, 9) 경찰공무원감찰카드 폐기, 10)재산등록 심사업무 개선 11) 재산등록 기준시가 확인절차 개선방안의 11개 과제이다. 위의 과제 중에서 총무과의 '기본근무자세 및 예절준수 확립방안'과 감찰관실의 '부조리근절 및 기강확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는 경찰의 기강확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며, 나머지 9개 항목은 경찰의 감찰활동의 개선과 관련된 것으로 경찰의 기강확립과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경찰기강확립을 위하여 선정된 총 12개 과제의 목록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경찰기강확립 추진과제목록

부 서	과 제 연 번	과 제 명
총무과	총무 Aa-18	1) 기본근무자세 및 예절준수 확립방안
감사관실	감사 Aa-1	1) 공개적이고 투명한 감찰활동실시
	감사 Aa-2	2) 계고, 특별교양 및 주의 처분개선
	감사 Aa-3	3) 과중한 징계양정 완화
	감사 Aa-4	4) 감독자 연대문책 합리화
	감사 Aa-5	5)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 추진실태 점검
	감사 Aa-6	6) 개혁과제항목 위주 감사
	감사 Aa-7	7) 재산등록서류 열람·복사업무 개선
	감사 Aa-8	8) 부조리근절 및 기강확립
	감사 Aa-9	9) 경찰공무원감찰카드 폐기
	감사 Aa-10	10) 재산등록 심사업무 개선
	감사 Aa-11	11)재산등록 기준시가 확인절차 개선방안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2. 성과 평가의 측정지표 및 측정도구 신뢰도분석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기강확립을 위해 경찰이 설정한 개혁과제와 「경찰개혁 100일 작전」에서 경찰청장이 지시한 구체적인 개혁 내용을 아래와 같이 분류 정리하였다. 이런 분류는 이론적 논의에서 경찰의 기강확립과 관련한 기본자세를 참고하였다.

아래 〈표 2〉은 「경찰개혁 100일 작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 평가의 측정지표 및 각 하위 변수의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이다.

〈표 2〉 경찰기강확립을 위한 성과 평가 지표 및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측 정 지 표	문항번호	신뢰도
감찰개혁의 집행실적	감찰활동의 민주성	* 감찰시 신분 및 이유 고지 정도 * 적발 내용 고지 정도 * 소명자료 제출 기회부여 정도 * 비인격적 조사 및 개인사물조사 자제 정도 * 본인의 의사에 반한 연행, 조사 자제 정도	* 1 * 2 * 3 * 4 * 5	.7852
	환류체계의 개선	* 징계양정요구 완화 정도 * 징계양정의 합리적 적용 정도 * 감독자 연대 문책의 합리화 정도	* 9 * 10 * 12	.8229
	감찰활동의 개선	* 감찰활동에 대한 거부감 완화 정도 * 감찰활동의 합리화 정도 * 감찰활동 개선에 따른 자율적 근무분 위기 조성 정도 * 감독자 문책제도개선에 따른 감독자 사기제고 정도 * 감찰카드 폐기에 따른 근무의욕 향상 정도 * 재산등록업무개선에 따른 거부감 완화 정도	* 6 * 7 * 8 * 14 * 22 * 23	.7591
기강확립성과	친 절 성	* 대민예절 준수 정도 * 경찰예절준수 정도 * 전화 친절도	* 37 * 42 * 43	.7947
	성 실 성	* 출근 및 중식시간 준수 정도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 준수 정도 * 물자 절약 정도 * 용모 복장 단정 정도	* 36 * 38 * 39 * 41	.7291
	상호신뢰성	* 상하간 신뢰와 존경 분위기 조성 정도 * 권위적 지휘방식 타파 정도 * 상하간 협력을 통한 업무 수행 정도 * 동료간 음해 중상모략 자제 정도	* 24 * 25 * 26 * 30	.8740
	모 범 성	* 기초질서 준수 정도 * 교통법규 준수 정도 * 유흥업소 출입자제 정도	* 44 * 45 * 46	.8339
	청 렴 성	* 인사 청탁 자제 정도 * 사건 청탁 자제 정도 * 조직폭력배와의 유착 근절 정도 * 지방토호세력과의 유착 근절 정도 * 외부인사와의 회식자제 정도 *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경찰권 행사 자제정도 *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경찰 정보활용 자제 정도	* 31 * 40 * 32 * 33 * 34 * 28 * 29	.8351

첫째, 감찰개혁과제 정도는 감찰활동의 민주성과 감사활동결과의 환류체계 개선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감찰시 신분 및 이유 고지 정도, 적발 내용 고지 정도, 소명자료 제출 기회부여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정도, 비인격적 조사 및 개인사물조사 자제 정도, 본인의 의사에 반한 연행·조사 자제 정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7852로 나타났다. 후자는 징계양정 요구 완화 정도, 징계양정의 합리적 적용 정도, 감독자 연대 문책의 합리화 정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8229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찰개혁과제의 집행에 따른 직접적인 성과는 감찰활동에 대한 거부감 완화 정도, 감찰활동의 합리화 정도, 감찰활동 개선에 따른 자율적 근무분위기 조성 정도, 감독자 문책제도 개선에 따른 감독자 사기 제고 정도, 감찰카드 폐기에 따른 근무의욕 향상 정도, 재산등록업무개선에 따른 거부감 완화 정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런 변수들을 통해 감찰개혁과제의 성과를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는 .759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둘째, 경찰기강확립의 성과는 친절성, 성실성, 상호신뢰성, 모범성, 청렴성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친절성은 대민예절 준수 정도, 경찰예절준수 정도, 전화 친절도를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7947이다. 또한 성실성은 출근 및 중식시간 준수 정도,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규정 준수 정도, 물자 절약 정도, 용모 복장 단정 정도를 측정지표로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7291이다. 상호신뢰성은 상하간 신뢰와 존경 분위기 조성 정도, 권위적 지휘방식 타파 정도, 상하간 협력을 통한업무 수행 정도, 동료간 음해 중상모략 자제 정도를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8740이다. 모범성은 기초질서 준수 정도, 교통법규 준수 정도, 유흥업소 출입자제 정도의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8339이다. 끝으로, 청렴성은 인사 청탁 자제 정도, 사건 청탁 자제 정도, 조직폭력배와의 유착 근절 정도, 지방토호세력과의 유착 근절 정도, 외부인사와의 회식자제 정도,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경찰권 행사 자제정도,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경찰 정보활용 자제 정도 등 다양한 하위 변수를 측정지표로 사용하였으며, 청렴성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8351이다.

경찰개혁의 성과를 측정하는 위의 모든 변수들의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6000을 넘어 척도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감찰개혁과제의 집행실적 및 성과 분석

1) 감찰개혁과제의 집행실적 분석

(1) 감찰활동의 민주성

감찰활동의 민주성 확립을 위한 개혁과제의 집행실적에 대해 경찰관 56.8%가 긍정적 평가(전적으로 그렇다: 30.3%, 약간 그렇다: 26.5%)를 한 반면에 부정적 평가를 한 경찰관은 25.6%로 나타났으며 17.6%는 유보적 태도(그저 그렇다)를 나타냈다. 감찰활동의 민주성 확립과 관련한 각 항목의 응답결과의 평균치, 전체 평균치, 경찰서와 파출소 근무자들 사이에 응답 결과의 차이를 분석한 것은 아래 〈표 3〉과 같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표 3〉 감찰활동의 민주성 확립을 위한 개혁과제 집행실적 분석

항목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집단간 차이				
				집 단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도
감찰시 신분 및 이유 고지 정도:	3.16	3.51	.9272	파출소: N188	3.50	.8950	.076	.939
적발 내용 고지 정도:	3.75							
소명자료 제출 기회부여 정도:	3.29			경찰청(서): N 51	3.49	1.0464		
비인격적 조사 및 개인사물 조사 자제 정도:	3.95							
본인의 의사에 반한 연행 및 조사 자체 정도:	3.52							

(아주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표 3〉은 감찰활동의 민주성 확립을 위한 개혁과제의 실천도에 대한 평균과 집단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감찰활동의 민주성 확립을 위한 개혁과제의 실천도의 평균은 3.51로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5]. 따라서 감찰활동의 민주성 확립을 위한 개혁과제는 비교적 잘 실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파출소 근무자와 경찰청(서) 근무자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감찰활동의 민주성 확립에 관한 하위 지표 중 비인격적 조사 및 개인사물조사 자제에 관한 평균은 3.95로 가장 높은 실천도를 나타냈으나 감찰시 신분 및 이유 고지 정도에 관한 평균은 3.16으로 실천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감찰활동 결과의 환류체계의 개선

감찰활동 결과의 환류체계 개선을 위한 개혁과제의 실천 정도에 대해 경찰관의 과반수 이상인 57.4%가 긍정적 평가(전적으로 그렇다 24.6%, 약간 그렇다 32.8%)를 한 반면에 부정적 평가를 한 경찰관은 21.6%로 낮게 나타났으며 21.0%는 유보적 태도(그저 그렇다)를 나타냈다.

5) 본 연구에서는 각 분야의 실천도 및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5점 등간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그 값은 아주 긍정(5점), 약간 긍정(4점), 보통(3점), 약간 부정(2점), 아주 부정(1점)이다. 개인이 응답할 때는 질적 의미를 갖는 다섯 개중에 하나를 선정하게 되지만 이들의 평균값을 구하게 되면 양의값으로 전환된다. 이때 그 값의 의미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즉, 아주 긍정과 아주 부정을 각각 4.5점 이상과 1.5점 미만으로 설정하게 되면 이들 변량의 크기는 0.5점이고 나머지는 1.0이 되는 불합리성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척도의 변량의 크기를 같게 해야 한다. 전체 변량의 크기는 4이며, 카테고리는 5개이다. 따라서 1개의 카테고리의 폭은 0.8로 설정해야 한다(Jillson, 1975: 138). 이에 따라 양적 척도를 질적 척도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4.2000-5.0000: 아주 긍정, 3.4000-4.2000: 약간 긍정, 2.6000-3.4000: 보통, 1.8000-2.6000: 약간 부정, 1.0000-1.8000: 아주 부정.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표 4〉 환류체계의 개선을 위한 개혁과제 실천도 분석

항목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집단간 차이				
				집 단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도
징계양정요구 완화 정도:	3.58	3.46	.9804	파출소: N190	3.44	.9875	.731	.501
징계양정의 합리적 적용 정도:	3.48			경찰청(서): N52	3.50	.9463		
감독자 연대 문책의 합리화 정도:	3.35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환류체계 개선을 위한 개혁과제의 실천도의 평균은 3.46으로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감찰활동 결과의 환류체계 개선을 위한 개혁과제 또한 비교적 잘 실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감찰활동의 환류체계 개선에 관한 하위 측정 지표 중 징계양정 요구의 완화 정도에 관한 평균은 3.58로 가장 높은 실천도를 나타냈으나 감독자 연대문책의 합리화 정도에 관한 평균은 3.35로 실천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감찰개혁의 성과 분석

감찰개혁과제의 집행에 따른 직접적인 성과를 분석한 것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감찰활동 관련 개혁과제의 성과 분석

항목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집단간 차이				
				집 단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도
감찰활동에 대한 거부감 완화 정도:	3.52	3.75	.6417	파출소: N187	3.75	.6303	-.310	.757
감찰활동의 합리화 정도:	3.40							
자율적 근무분위기 조성 정도:	4.55			경찰청(서): N 52	3.78	.6685		
감독자 사기 제고 정도:	3.23							
감찰카드 폐기에 따른 근무의욕 향상 정도:	4.50							
재산등록 업무 개선에 따른 거부감 완화 정도:	3.85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감찰활동 관련 개혁과제 성과의 평균은 3.75로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감찰개혁과제의 성공적 실천으로 감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찰활동의 합리성이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감찰개혁과제의 평가와 관련하여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감찰개혁의 성과에 관한 하위 측정 지표 중 자율적 근무분위기 조성의 평균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감독자 사기 제고에 관한 평균은 3.23으로 성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기강확립의 성과 분석

경찰 기강확립과 관련한 기본자세에는 규율과 청렴성이 중요하다. 즉, 경찰은 법령을 준수하고 집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하며, 친절, 성실·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절성,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성실성, 상호신뢰성, 모범성, 청렴성을 기준으로 기강확립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1) 친절성

친절성 관련 개혁과제의 성과를 분석한 것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친절성 관련 개혁과제 성과 분석

항목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집단간 차이				
				집 단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도
대민예절 준수 정도:	4.65	4.66	.4988	파출소: N195	4.71	.4557	2.772	.006
경찰예절 준수 정도:	4.54			경찰청(서): N 54	4.50	.5635		
전화친절도:	4.80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친절성에 관한 개혁 성과의 평균은 4.66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파출소 근무자의 평균은 4.71로서 경찰청(서) 근무자의 평균 4.50보다 0.21이 높은 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친절성에 관한 개혁과제의 실천에 따른 경찰관 친절성 향상에 대해 94.5%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데 비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경찰관은 0.8%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경찰관들의 친절성은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찰대개혁 실시로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공손한 언어사용으로 대민예절 및 경찰예절을 준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를 친절히 받는 등 친절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지난 2월 26-27일에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제3차 시민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즉, 부산시민은 부산경찰의 친절도가 과거와 비교하여 어떠한 지에 대해 친절하게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61.2%(매우 친절하게 개선되었다 7.1%, 다소 친절하게 개선되었다 54.1%)인 반면에 불친절하게 변하였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3.3%(매우 불친절하게 변하였다 1.1%, 대체로 불친절하게 변하였다 2.2%)로 나타났으며 변한 것이 없다는 응답은 28.6%였다(부산지방경찰청, 2000. 3. 2.: 21).

친절성의 하위 측정 지표 중 전화친절도의 평균은 4.80으로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냈으나 경찰예절 준수 정도의 평균은 4.54로 성과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성실성

성실성과 관련한 개혁과제의 성과를 분석한 것은 아래 〈표 7〉과 같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표 7〉 성실성 관련 개혁과제 성과 분석

항목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집단간 차이				
				집 단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도
출근 및 중식시간 준수 정도:	4.48	4.50	.5455	파출소: N195	4.54	.5142	2.450	.015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 준수 정도:	4.67							
물자 절약 정도:	4.23			경찰청(서): N 54	4.34	.6129		
용모 및 복장 단정 정도:	4.62							

〈표 7〉은 경찰대개혁 실시에 따른 경찰관의 성실성 확립을 위한 개혁과제의 성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실성 확립을 위한 개혁과제 성과의 평균은 4.50으로 매우 높다. 따라서 경찰대개혁 실시로 경찰관들은 출근 및 중식시간을 잘 준수하게 되었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게 되었으며, 비품·소모품 등 물자를 더욱 절약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모와 복장이 보다 단정하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찰대개혁 실시로 과거보다 성실하게 근무하게 되었다는 긍정적 반응이 91.8%로 나타난 반면에 부정적 반응은 1.5%에 불과 했다.

성실성 측정 지표 중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규정 준수의 평균은 4.67로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냈으나 비품, 소모품 등 물자절약의 평균은 4.23으로 성과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상호신뢰성

상호신뢰성 향상과 관련된 개혁 과제의 성과를 분석한 것은 아래 〈표 8〉이다.

〈표 8〉 상호신뢰성 향상을 위한 개혁과제 성과 분석

항목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집단간 차이				
				집 단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도
상하간 신뢰와 존경 분위기 조성 정도:	3.66	3.65	.8254	파출소: N191	3.63	.8117	-.642	.521
권위적 지휘방식 타파:	3.45							
상하간 협력을 통한 업무 수행 정도:	3.60			경찰청(서): N 53	3.71	.8499		
동료간 음해 중상 모략 자제 정도:	3.92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호신뢰성 향상을 위한 개혁과제의 성과를 나타내는 평균값은 3.65로 약간 높은 수준이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상호신뢰성에 관한 사항 동료간 음해 중상모략 자제의 평균은 3.92로 성과가 가장 높았으나 권위적 지휘방식 타파 정도의 평균은 3.45로 성과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개혁 100일 작전으로 상호신뢰성이 회복되었다는 긍정적 반응은 64.0%(전적으로 그렇다 19.5%, 약간 그렇다 44.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에 부정적 반응은 14.3%(별로 그렇지 않다 10.9%, 전혀 그렇지 않다 3.4%)로 상당히 낮았다. 이를 통해 볼 때 이번에 실시한 경찰개혁 100일 작전으로 경찰관들은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한 마음 한뜻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풍토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상호신뢰성 측정 지표 중 동료간 음해 중상모략 자제에 관한 평균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권위적 지휘방식 타파에 관한 평균은 3.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4) 모범성

모범성과 관련한 개혁과제의 성과를 분석한 것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모범성 확립을 위한 개혁과제 성과 분석

항목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집단간 차이				
				집 단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도
기초질서 준수 정도:	4.55	4.60	.5552	파출소: N194	4.63	.5326	2.126	.034
교통 법규 준수 정도:	4.54							
유흥업소 출입 자제 정도:	4.73			경찰청(서): N 52	4.45	.6298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범성 측정 지표 중 유흥업소 출입자제에 관한 평균이 4.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평균은 4.54로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모범성에 관한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찰관의 모범성 확립을 위한 개혁과제 성과의 평균은 4.6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파출소 근무자의 평균이 4.63으로 경찰청(서) 근무자의 평균 4.45보다 0.18이 높은 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리고 기초자료에 의하면 모범성 확립을 위한 개혁과제의 성과에 대해 93.8%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 반면에 부정적 반응은 1.4%에 불과 했다.

(5) 청렴성

청렴성과 관련한 개혁과제의 성과를 분석한 것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청렴성 확립을 위한 개혁과제 성과 분석

항목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집단간 차이				
				집 단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도
내부인사 청탁 자제 정도:	3.77	4.33	.5749	파출소: N193	4.36	.5567	1.933	.054
사건 청탁 자제 정도:	4.53							
조직폭력배와의 유착 근절 정도:	4.54			경찰청(서): N 52	3.19	.6166		
지방토호세력과의 유착 근절 정도:	4.27							
외부인사와의 회식 자제 정도:	4.55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경찰권 행사 자제 정도:	4.26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경찰 정도활용 자제 정도:	4.45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번에 실시한 경찰 대개혁 100일 작전은 경찰관의 청렴성 향상에 크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청렴성에 관한 평균은 4.33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렴성 측정 지표 중 외부인사와의 회식 자제에 관한 평균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내부 인사청탁 배제에 관한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평균은 3.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내부인사 청탁 근절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이 경찰관의 부조리 개선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은 부산지방경찰청 조사자료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즉, 지난 2월에 실시한 3차 조사에서 부산시민의 50.4%가 경찰관의 청렴도가 개선되었다는 반응을 나타냈는데 이는 개혁초기의 9%보다 41.4% 증가된 것이다. 2차 조사와 비교하여 청렴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2.5% 증가하였고, 청렴해지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조리가 있다는 응답은 3.2%로 개혁초기의 59.7%보다 무려 56.5%나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이 경찰관 청렴도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경찰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자료에서도 경찰개혁 100일작전이 경찰관의 청렴도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6] 즉, 과거와 비교하여 경찰공무원이 청렴해졌다는 응답이 86.5%(매우 청렴하게 변하였다 27.2%, 다소 청렴하게 변하였다 59.3%)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에 그대로이다 11.0%,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1.4%로 나타났다. 100일작전 추진전인 10월 조사와 비교해 보면 매우 청렴하게 변했다는 24.3% 증가한 반면에 더 나빠졌다는 반응은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100일 작전이 경찰관의 청렴도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분석결과에 대한 종합적 논의

본 조사 결과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의 실시로 경찰기강이 상당히 확립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경찰관이 80.6%나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관의 96.9%가 기강확립과 관련이 깊은 부조리 근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는 등 이번에 실시한 경찰개혁은 기강확립의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7]

먼저 감찰개혁 측면에서 살펴보면, 감찰활동의 민주성 확립을 위한 과제의 실천도(평균 3.51)가 감찰활동의 환류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의 실천도(평균 3.4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경찰기강확립을 위한 감찰개혁은 비교적 잘 실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감찰개혁 과제 성과의 평균은 3.75로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감찰개혁은 자율적 근무분위기 조성에 가장 크게 기여(평균 4.50)를 한 반면에 감독자 사기 제고에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기여(평균 3.23)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에 실시한 감찰개혁은 현장 실무자들의 근무의욕 제고의 측면에서 상급자보다는 하급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강확립의 성과를 친절성, 성실성, 상호신뢰성, 모범성, 청렴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이 4.3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친절성의 평균이 4.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상호신뢰성의 평균은 3.6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성실성의 평균은 4.50, 모범성의 평균은 4.60, 청렴성의 평균은 4.33으로 나타나서 모두 성과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상호신뢰성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은 이번에 실시한 경찰기강확립

6) 서울지방경찰청, 제4차 여론조사 자료, 1999. 12.

7) 일반국민들의 경우도 용모·복장 개선(75.5%), 대민친절도 향상(61.6%), 근무태도 개선(57.2%), 금품수수관행 개선(53.1%)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 등 경찰개혁 100일 작전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2000.).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과 관련한 경찰 대개혁 100일 작전이 경찰이미지 개선 등과 같은 대외적 측면에 초점을 둔 것에 다소 기인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오랜 관행이나 문화란 단기간에 변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에도 기인할 것이다. 그 결과 경찰기강확립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과제의 성과는 높게 나타난 반면에 상하간 신뢰회복 등과 같이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과제들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집단간 즉, 경찰청(서) 근무자와 파출소 근무자간 개혁의 실천도와 성과를 비교 분석 결과 파출소 근무자의 경우가 두 차원 모두에서 높은 값이 나타났다. 이는 이번에 실시한 경찰 대개혁100일 작전의 기본목표('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경찰상 정립')에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이 개혁의 성과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측면에 초점을 둔 전략을 추진한 결과 대민 접촉이 많은 파출소 근무자들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결과라고 해석된다.

이와 같이 이번에 실시한 경찰 대개혁 100일 작전은 경찰관의 기강확립에 크게 기여하고있어 대체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징계경찰관이 상당히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금품수수 등의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보면 기강확립과 관련한 경찰의 개혁이 단기적, 형식적, 가시적, 실적 중심의 개혁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경찰의 기강확립과 관련한 이번의 경찰대개혁이 주로 감찰활동의 민주성 증진과 감찰대상자의 편의증진이란 측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기강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수반한 가운데 경찰관의 의식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Ⅳ. 경찰기강확립을 위한 정책과제

경찰기강 확립과 관련한 성과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를 여러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해서 경찰의 기강확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사전적 예방을 위한 방안도 있을 것이며, 사후적 통제의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런 방안을 개인적·심리적, 제도적, 문화적·환경적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경찰의 기강확립과 관련하여 논의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정책 과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경찰의식의 개혁과 경찰교육훈련의 강화

최근에 들어와 치안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범죄는 질적·양적으로 모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경찰체제는 급증하는 치안수요를 효과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 내부역량이 미약하고, 폭발하는 치안수요에 대하여 물리적 강제력만으로 대응하는 원시적 단계의 경찰활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송광섭, 1997: 99). 1999년 7월 경찰청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아직도 경찰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1999년 3월 서울지

8) 일반인들의 종합만족도 점수가 43.06점인데 반하여 민원인의 경우에는 59.94점으로 나타났다. 이 둘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방경찰청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가 65.4%로 나타났다[9](문성호, 1999: 4). 이러한 상황 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경찰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개혁의지의 확산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경찰개혁의 성공여부는 바로 경찰관이다. 비록 경찰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나 대책들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경찰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경찰 고위 간부들의 일방적인 상의하달식의 명령이나 강요에 의해서는 경찰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경찰이 전통적인 경찰로부터 현대적인 선진경찰로의 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변혁에 대한 경찰관의 의식개혁은 경찰개혁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경찰관의 역할은 이전의 전통적인 경찰활동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 경찰개혁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모든 구성원들이 현대적인 선진경찰의 철학과 새로운 역할변화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사회를 직시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의식의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김인, 허용훈, 2000: 56).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경찰관을 양성해야 하고,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경찰교육훈련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경찰의 의식개혁도 바로 이러한 교육훈련을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다. 현재 경찰에 대한 교육·훈련은 교육목표가 왜곡되어 있고, 그 수단인 교과과정은 창의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경찰교육개혁의 방향은 경찰관 각인으로 하여금 투철한 직업정신과 직업윤리로 무장하게 하고, 법집행자로서의 창의성, 자율과 경쟁원리가 존중되고 인정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경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도 개선되어야 한다. 집체교육, 현장교육, 전문교육, 인성교육을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경찰청, 1999: 21).

특히 경찰의 도덕적 무장과 실천을 위한 교육 훈련은 강의식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및 비리상황들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들을 익히는 모의훈련이나 역할연기훈련 등이 바람직하다(표창원, 1999: 12).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찰의 세계화 전략은 경찰교육의 개혁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하고, 이러한 교육개혁은 기본부터 다시 정립해야 할 것이다(이상안, 1999: 791).

2. 경찰채용제도의 획기적 개선

경찰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임용의 첫 단계인 채용과정에서부터 훌륭한 인성과 자질을 갖춘 인력을 가능한 한 많이 유치·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채용제도의 개선을 위해 경찰조직이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적극적인 모집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채용시 선발기준의 직무적합성을 제고하는 일이다.

적극적 모집활동으로서는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각급학교나 직업훈련소 등 인력

합친 평균 종합만족도는 52점이었다.

9) 현대리서치연구소, 〈경찰개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1999. 6.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양성기관, 전문직업단체에 대한 방문, 그리고 경찰직업에 대한 소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전국대학의 취업설명회에 경찰조직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훌륭한 인성과 자질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채용시험시부터 보다 훌륭한 인성과 자질을 갖춘 우수인력을 선별할 수 있도록 현행의 부적절한 시험과목은 직무적합성이 보다 높은 과목으로 대체되어야 하고, 현재 형식화되어 있는 인성·적성검사를 정식 채용과목으로 부과하여, 권위있는 기관에 이들 검사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유준, 1995: 63-65).[10]

3. 경찰사기의 강화 및 처우개선

경찰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높은 근무의욕과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근무태도를 확립해야 한다. 이와 같이 조직 구성원의 기강확립이 확립되어야 그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동시에 그 구성원은 조직을 통하여 개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조직에서 그 구성원의 사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경찰업무의 대부분이 경찰의 최전선인 가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공중에 대한 봉사활동을 주임무로 하고 있는 대민관계상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경찰사기의 진작을 통한 봉사적 태도 없이는 경찰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152-153).

경찰관의 사기는 경찰관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하고 싶은 일을 기분 좋게 하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일한 만큼의 보수를 지급 받고, 잘 할 때 합당한 상을 받고, 못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을 때 상승되고 유지된다(표창원, 1999: 19). 이러한 측면에서 경찰사기의 진작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고찰할 수 있는 바, 하나는 소극적으로 사기의 규제요인을 조정·충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사기앙양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11].

그 중에서도 경찰관의 보수와 처우수준은 경찰관들의 사기를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서 부정부패의 유혹에 대한 저항력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경찰관의 기강확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영국, 미국 등의 선진 외국에서 경찰이 받는 보수나 수당의 수준은 우리 나라 경찰의 보수 수준을 결정할 때 꼭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표창원, 1999:10; Sean Howe, 1994: 12-3).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경찰 보수의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받는 보수나 처우수준은 근무여건과 비교하여 볼 때 아직까지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현실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수사활동비나 시간외 수당은 경찰의 사기진작과 기강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12] 경찰의 보수나 처우개선 없이 경찰의 기강해이사범의 근절

---

10) 영국 경찰은 채용시 경찰관 지원 자격요건으로 ①전과(前科)(previous convictions) 또는 범죄나 부정직한 행위와 관련된 경찰경고(cautions)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③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 (대출금연체나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의 상태에 있지 않은 자)로 명시하고, 청렴성 평가를 통하여 청렴성과 정직성 및 준법성을 중요한 채용조건으로 삼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까다로운 적성검사는 물론 심리분석가(psychiatrist)와의 면담 분석조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하고 있다(표창원, 1999: 12).

11) 적극적인 사기앙양방법으로는 1) 국가관·공직관 확립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2) 경찰행정상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케 하는 제안제도의 적극 실시 3) 업적에 대한 응분의 포상확대 4) 고충의 적극처리 5) 인간관계 관리의 효율적 개선 등을 들 수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12) 현재 시간외근무수당 제도는 누구든지 늦게까지 남아 있다가 사인만 하면 월 한도액까지 지급되어 부족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을 기대하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이 이외에도 근무여건 역시 과중한 업무량, 파출소업무의 과중, 타부처에 의한 과중한 업무부과로 인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8). 이를 위해서는 파출소 근무체체의 전환, 표준근무시간 준수의 의무화, 타부처 협조업무의 이양과 경찰기능의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경찰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보장

경찰은 공권력작용 기관으로서 법 시행을 위해 물리적 힘을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성격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에 비해 더욱 권위적이며 폐쇄적이다. 경찰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는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고하여 경찰행정의 민주성에 기여하려는 데 있다.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찰행정은 국민의 의혹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국가경찰제도 하에서 경찰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통제가 없다. 국회의 경찰에 대한 통제도 극히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행정은 주권자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다(이기우, 1998: 33).

경찰에 대한 주민참여는 경찰서비스의 합리화와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업무나 업무처리 과정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며 각종 범죄예방 및 퇴치 활동을 주민과 함께 하는 경찰과 주민간의 파트너십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미국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네지향적 경찰(Neighborhood-Oriented Policing)[13] 및 문제해결지향적 경찰(Problem Solving-Oriented Policing)[14]은 경찰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보장을 통하여 경찰활동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며 나아가서 경찰기강 해이사범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Oliver, Willard M., 1998)[15]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경찰은 다양한 협력단체들을 경찰청이나 경찰서 및 파출소에 두고 있다. 그러나 몇몇 협력단체들을 제외하며 그 역할에 차이가 없으며, 대부분의 협력단체 운영도 형식적이다. 그리고 많은 회원들 중 사업상 얼굴내밀기, 교통단속 회피 등의 수단으로 단체에 가입하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 이들 협력단체가 미국에서 말하는 주민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경찰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경찰을 지원하는 단순한 후원회 성격을 띠는 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참여자들도 다른 많은 단체들처럼 친목도모를

한 보수의 보충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13) 동네지향적인 경찰은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파트너쉽으로서 경찰과 지역사회가 상호 협동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경찰은 상호 파트너로서 범죄와 무질서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 전략의 개발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네지향적 경찰의 핵심적인 목표는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상호신뢰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OFFICE OF THE CHIEF OF POLICE, 1997:1).

14) 문제해결지향적인 경찰은 지역사회의 특정한 관심사가 확인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치유책이 발견되어지는 과정이다(Community Policing Consortium, 1994:13). 그러므로 문제해결은 주민과 경찰간의 협동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정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Eck and Rosenbaum, 1994:9).

15) 현재 미국경찰은 각종의 주민참여 제도로서 지역사회 순찰, 지역사회 범죄예방 프로그램, 의사전달프로그램, 및 지역사회의 사회적 통제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모임, 동네감시 프로그램, 자전거 순찰, 경찰과 청년들간의 소프트볼 게임 및 경찰지소의 설립 등이 있다(Willard M. Oliver, 1998:38).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위한 하나의 단체로 인식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김인, 허용훈, 2000: 50).

앞으로 경찰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통하여 경찰기강을 확립하려고 한다면 경찰은 전향적인 입장에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찰협력단체를 경찰의 단순한 후원단체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경찰의 기강과 관련한 주요문제 등의 원인과 해결책 등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심의하고 공동으로 결정하는 단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시민주도의 경찰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 협조, 견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경찰에 대한 시민의 역할과 그 기능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시민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경찰에게도 필요하며, 특히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는 오늘날의 우리 나라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경찰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고위 경찰간부의 인식은 더욱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경찰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경찰의 부조리 및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규제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의 부조리 및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경찰규제를 면밀히 적출, 개선·개혁함으로써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경찰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찰규제는 규제의 최소화, 규제수준의 현실화, 국민편익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전면적인 개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즉, 달성하고자 하는 규제목적을 유지하면서 과다한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규제강화가 필요한 부분은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준수율이 저조한 규제에 대해서는 준수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규제기준을 현실화하여야 하며, 규제를 하더라도 가능한 한 국민편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편의주의적 방법과 방식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경찰개혁위원회·치안연구소, 1999: 452).

이와 더불어 공권력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권력의 행사와 관련하여 절차적 합리성을 강화하고, 재량권의 합리적 행사를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윤태범, 1999: 14).

6. 감찰제도의 획기적 개선

감찰활동과 관련한 경찰대개혁의 과제는 주로 감찰활동의 민주성과 감찰대상자의 편의라는 측면에서만 설정되었다. 이런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감찰제도의 개혁은 감찰활동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이미 연구된 바 있다. 즉, 경찰서의 사정역량 강화, 지방경찰청의 감찰요원의 효율적 관리, 감찰첩보수집의 제도화, 현장중심의 감찰활동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경찰개혁위원회·치안연구소, 1999: 433-437). 뿐만 아니라 대민 취약분야 중점감찰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대상업소 유착, 각종 이권 개입 등 부조리에 대한 수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각종 업체에 대하여 업무를 빙자하여 방문하는 행위는 특별감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산을 취급하는 직원들에 대한 정례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대상업소 단속정보 누설 행위자는 사전 색출하여 엄중 문책하도록 하여야 한다(권영식, 1998).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7. 시민비리고발 및 내부고발제도의 강화

경찰부조리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널리 홍보하여 주민감시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각 지방청은 경찰비리의 신고를 위하여 경찰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홍보부족 등으로 그 활용도가 매우 낮고, 비리 신고를 위한 유인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민신고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금품수수 등 중요 비리에 대한 신고실적은 전체 접수건수의 2.8%인 47건에 불과하다고 한다(경찰개혁위원회·치안연구소, 1999: 433). 또한 신고전화 이외에는 감사실과 시민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신고인에게 조사를 이유로 경찰관서에 출석토록 하고도 여비를 지급치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신고보상금지급제도가 없어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경찰개혁위원회·치안연구소, 1999: 440). 앞으로 경찰비리 신고장소를 경찰서가 아닌 동사무소에도 설치해서 시민이 아무런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내부고발을 강화하여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승진 등에 반영하는 등 내부고발의 활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부고발은 일반적으로 변화를 실행할 공식적 지위와 권한을 갖지 않는 조직 구성원에 의한 불법적, 비도적적, 또는 부당한 행위들의 공표를 의미한다. 최근에 들어와 내부고발제도는 대규모 기업이나 정부기관들의 부정한 활동의 효과적 방지대책으로서 공익을 위협하거나 저해하는 부정이나 비리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오광석, 1997: 241). 그러나 이 제도의 남용은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조직내의 불신감의 확대나 조직구성원들간의 갈등과 알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의 활용에는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8. 부패관련 신고자 처벌감면제도의 도입

경찰의 기강확립 중 경찰관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개인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부정부패는 개인적 입장에서 볼 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즉, 그러한 행위를 통해 얻는 기대이익과 기대손해를 따져 볼 때 기대이익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그 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이며, 동시에 발각되더라도 이에 따른 처벌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부패행위에 연루되면 언제라도 발각될 가능성을 극히 높이는 방안이 부정부패 해소의 첩경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정부패의 시효기간도 설정하지 않고, 동시에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도 먼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처벌을 면제해 주거나 크게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부정부패의 행위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극히 높아지고, 따라서 합리적인 개인도 부패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제도는 경찰의 기강확립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V. 결 론

경찰의 기강확립은 거역할 수 없는 경찰대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다. 앞으로 경찰은 경찰기강의 확립을 통하여 그 동안의 질책과 비난의 대상으로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고 국민의 애정과 신뢰를 받는 새로운 경찰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태도와 경찰업무에 대한 협조, 경찰행위에 대한 정당성 인정 등은 모두 시민들의 경찰기강에 대한 인식에 달려 있다. 경찰은 법의 존엄성을 지키며 공안과 질서유지의 제일선에 선다는 투철한 직업의식의 재확립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경찰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경찰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경찰기강의 쇄신은 청렴하고 공정한 법집행과 친절하게 봉사하는 명예로운 경찰상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식의 개혁과 경찰교육훈련의 강화, 경찰채용제도의 획기적 개선, 경찰사기의 강화 및 처우개선, 경찰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보장, 경찰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감찰제도의 획기적 개선, 시민비리고발 및 내부고발제도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경찰의 기강확립을 위한 개혁을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경찰행정관리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이와 같은 관리체계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으나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전한 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경찰대개혁에 따른 경찰기강확립의 성과를 개혁대상인 경찰관의 인식에만 기반을 두고 평가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구의 여건이 갖추어지면 서비스 대상집단인 시민들과 나아가 경찰활동을 직접 경험했던 시민, 즉 고객을 표출하여 경찰기강확립의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도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참 고 문 헌

강대형. (1991). 파출소 단위 방범활동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권 1호, 치안연구소.

강신택. (1995). 사회과학연구의 논리, 서울: 박영사.

권영식. (1998). 경찰관 부조리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대책, 고급간부과정자료집, 1998.

김 인. (1997). 경찰의 치안서비스 활동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치안연구소.

김인 · 허용훈(2000). 지역사회경찰제도의 도입방안, 동계발표논문집, 한국지방정부학회.

문성호. (1999). 청문감사관 제도의 발전방안: 시민참여와 반부패전략을 중심으로,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치안연구소 · 한국경찰학회.

송광섭. (1997). 경찰의 법률서비스체계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1997.

송병주 · 정원식. (1999). 일선경찰의 업무수행에 대한 영향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33권 3호.

오광석. (1997). 내부고발의 적대감과 문제해결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3호.

윤태범. (1999). 부패의 구조와 개혁: 경찰부패를 중심으로, 제3회 학술회의 발표논문, 경찰 발전연구회.

윤태범. (1999), 부패와 개혁: 체제적 접근,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이기우. (1998). 지방경찰제도의 개선방안, 지방경찰제와 자치교육제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98-1,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상안. (1999). 경찰행정학, 대명출판사.

이유준. (1995). 경찰행정의 서비스 향상방안, 한국행정연구, 제4권 제2호, 한국행정연구원.

이재은. (1998). 한국공무원의 부패발생배경에 대한 연구:정치경제적 맥락을 중심으로,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전수일. (1996). 관료부패론, 선학사.

표창원. (1999). 경찰부정부패, 바람직한 한국형 경찰부정부패 방지책의 모색, 제3회 학술회의 발표논문, 시민을 위한 경찰발전 연구회.

경찰개혁위원회, 한국경찰학회, 치안연구소. (1998). 자치경찰 공청회 결과 보고서.

경찰청. (1999), 1999 경찰백서.

경찰청. (1999), 전국 경찰 지휘관 Workshop.

부산지방경찰청. (1999). 경찰대개혁 추진업무 모음집.

경찰개혁위원회 · 치안연구소(1999). 경찰개혁위원회 자료집, 기강쇄신분과위원회, 연구자료집 제6권, 1999.

경찰대학. (1999). 경찰실무전서.

경찰청. (2000). 경찰개혁 100일 작전의 성과와 방향.

서울지방경찰청. (1999). 제4차 여론조사자료집.

부산지방경찰청. (2000).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 관련 제3차 여론조사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경찰분야 부패방지대책 연구, 세미나 자료,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파출소단위 방범활동의 개선방안연구.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Bracy, Dorothy H.(1988). Proactive Measures Against Police Corruption: Yesterday's Solutions, Today's Problems, in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51(1).

Community Policing Consortium. (1994). *Understanding Community Policing: A Framework for Act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Dombrink, John. (1988). The Touchables: Vice and Police Corruption in 1980's.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51(1).

Dunn, William N. (1981). *Public Policy Analysi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Eck, John E. and Dennis P. Rosenbaum(1994). The New Police Order, In *The Challenge of Community Policing: Testing the Promises*. ed., Dennis P. Rosenbaum, Thousand Oak, C.A.: SAGE Publisher Inc.

Fletcher, E. (1997). *Corruption within the Police Force*, Advanced C.I.D. Course Project, Metropolitan Police Detective Training School, December.

Isaak, Alan C.(1981). *Scope and Method of Political Science*, The Dorsey Press.

Jillson, Irene Anne.(1975). The National Drug-Abuse Policy Delphi, In Linstone, Harold A., Turoff, Murray & Helmer, Olaf. *The Delphi Method: Techiques and Applications*, *Reading*, Ma.:Addison-Wesly Publishing Company.

Lynch, Gerald W. (1989). Police Corruption from the United States Perspective. *Police Studies*, 12(4), Winter.

McNamara, Joseph D.(1975). *The Impact of Bureaucratic Dysfunctions on Attempts to Prevent Police Corruption*.

Office of the Chief of Police. (1997), *Management Paper*, NO. 2, L. A.

Oliver, Willard M. (1998). *Community-Oriented Polic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Ripley, Randall B. & Grace A. Franklin. (1980). *Congress, the Bureaucracy and Public Policy*, 2nd ed. Homewood, Ill.: Dorsey Press.

Roberts, Denys (1988). Corruption, Law and the Community. *Police Studies*, 11(1), Spring.

Sean Howe. (1994). Your Salary at a Glance. *Police Review*, 4 (March): 12-3.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김 인: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공공서비스 배분의 결정요인과 형평성에 관한 연구, 1986.8)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행정학과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 분야는 도시공공서비스론, 정책론, 사회과학방법론 등이다. 주요저서는 새행정학(공저, 대영문화사, 1996), 행정과 가치(공저, 법문사, 1987)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지방의료원의 운영형태별 성과분석(한국행정학보, 33(3), 1999), 경찰서비스 공동생산의 효과: 자율방범활동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31(4), 1997), 정부 생산성의 개념과 이론적 접근(한국행정연구, 5(2), 1996), Institutional Arrangements, Community Attributes, and Performance of Coastal Fishery in Korea(India대학교 정치이론 및 정치분석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WOW2) 발표논문, 1999). 현재 한국지방정부학회장, 부산광역시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 부산광역시의회 자문교수 등을 맡고 있다.

허용훈: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권력의 원천과 배분, 1993)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공공서비스론, 정책분석론, 지방재정론이며 논문으로는 '지방정부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원봉사관리체계'(1997),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1998), '지방의료원의 운영형태별 성과분석'(1999), 지역사회경찰제도의 도입방안(2000) 등이 있다. 현재 한국지방정부학회 이사 및 부산경남·울산제주행정학회 이사,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이희태: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준공공부문조직의 공공서비스 성과 영향요인 분석, 1998)를 취득하고 현재 신라대학교 법정학부 전임강사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행정과 복지행정이며 저서로는 신행정학원론(공저)이 있다. 그리고 논문으로는 '도시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준공공부문조직의 역할'(1996), '사회복지관 서비스 성과의 영향요인 분석'(1997), '도시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발전방안'(1999), '도시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자원봉사프로그램의 성과영향요인 분석'(1999, 공동연구), '지방의료원의 운영형태별 성과분석'(1999, 공동연구) 등이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